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53 발의연월일: 2020. 12. 30.

발 의 자: 백종헌 · 지성호 · 전봉민

구자근・이태규・유경준

임이자・이종배・이철규

김용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, 성분, 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·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1차 포장에 제품의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후 사용기간 동안 제품에 주요 정보를 쉽게 인식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고형비누 등과 같이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음. 또한 고형비누 등은 1차 포장이 수분 증발 및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여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.

이에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

의 기재·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·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화장품의 기재사항) ①	제10조(화장품의 기재사항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	②
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	
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	
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다만, 소비자가 화장품의
	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
	고형비누 등 총리렁으로 정하는
	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	<u>니한다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